

VI. 예산 전용 보고

- 1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산 전용 보고

1.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산전용 보고

추진배경

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('20.5.1.시행)됨에 따라 보강공사 대상인 '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'의 설계용역 등 실시를 위한 예산전용

※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'22.12.31까지 관할 사·군·구에 보고하여야 하며, 성능보강 미 이행시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사업개요

- 사업명 :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설계용역 등
- 사업내용 : 공사범위, 공사내용 및 방법, 공사비 산출 등을 위한 설계 실시
-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 실태조사 결과(성동구 건축과-7156, '21.3.30.)

시설명	위치	연면적	주용도	외벽마감재	간이스프링클러
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	홍익동 147-22 ('92년 사용허가 건축물)	453.70㎡	노유자시설	드라이비트	미설치

※ '22.12월까지 드라이비트 제거,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완료 필요

전용내역

○ 전용사유

- 성동구로부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임이 통보됨('21.3.30.)에 따라 '22년 공사비 편성 및 실시를 위한 '21년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여 '22.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함 ※ 민간위탁금 불용액 (30백만원, '외국인노동자 체육대회' 코로나19로 미개최) 발생

- 전용내용 : 기 편성된 민간위탁금(307-05)의 통계목을 시설비(401-01)로 전용

- 전용금액 : 30,000천원(시비 100%)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과목			예산현액	전용요구액		변경 후 예산액
	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	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	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·운영	민간이전 (307)	민간위탁금 (307-05)	(×0) 4,735,191	(×0) 0	(×0) △30,000	(×0) 4,705,191
			시설비 (401)	시설비 (401-01)	(×0) 0	(×0) 30,000	(×0) 0	(×0) 30,000

향후계획

-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: '21.6월~7월

작성자 | 외국인다문화담당관 : 류경희(☎2133-5060) | 외국인주민인권팀장 : 정미경(☎2133-5075) | 담당 : 강현주(☎2133-5078)